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80
----------	---------

발의연월일 : 2022. 9. 26.

발의자 : 정정희, 김희동, 조기만,  
신찬호, 최세진, 이충현,  
한상욱, 전철규, 김민석

## 1. 제안이유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24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강서구의회에서는 조례의 명문화 규정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본예산, 추경예산) 심사, 결산 승인안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나. 입법예고 : 2022. 10. 6. ~ 2022. 10. 12.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0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u></p> <p>① <u>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변경)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u></p> <p>② <u>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③ <u>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u></p>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